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9. 12. 13.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9. 10. 21.) 상정 “보류” 의결

마. 재상정일자 :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19. 12. 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예기치 못한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안 제3조~제4조)
- 보상금액의 산정(안 제5조)
-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금 지급 등 (안 제6조~제8조)
- 보상제외(안 제9조)
- 시행규칙(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정옥)

-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험금 지급, 보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구로구 등 1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되고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험 계약 시 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구민 수요, 사업의 시급성, 기대효과, 예산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시기를 수정

나. 수정내용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 “공포한 날”을 “2020년 10월 1일”로 수정함.

####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164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19. 12. 5.

제안자: 이규선 의원 외 1명

## 1. 수정이유

- 구민 수요, 사업의 시급성, 기대효과, 예산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시기를 수정함.

## 2. 수정내용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 “공포한 날”을 ‘2020년 10월 1일’로 수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 “공포한 날”을 “2020년 10월 1일”로 수정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부 칙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가.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5.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5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민생활안전보험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내역(조례안 시행시 예상되는 비용을 기재)

-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비: 120,000천원
-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따른 홍보비: 2,000천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시)

-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소요예산: 122,000천원(3억원 미만)
- 차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추진
  - 보험가입비 조정(보상금 보장한도 상한액의 조정)
- 필요시 지속사업 여부 검토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김봉준
연 락 처	02-2670-30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4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예기치 못한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안 제3조~제4조)
- 다. 보상금액의 산정(안 제5조)
- 라.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의 지급청구, 보험금 지급 등 (안 제6조~제8조)
- 마. 보상제외(안 제9조)
- 바. 시행규칙(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2020년 예산 반영 예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원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가.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5.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5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민생활안전보험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내역(조례안 시행시 예상되는 비용을 기재)

-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비: 120,000천원
-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따른 홍보비: 2,000천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시)

-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소요예산: 122,000천원(3억원 미만)
- 차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추진
  - 보험가입비 조정(보상금 보장한도 상한액의 조정)
- 필요시 지속사업 여부 검토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김봉준
연 락 처	02-2670-3065